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6. 2.

행정위원회

1. 審查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2월 13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2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6년 2월 21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가. 제정이유

- 인터넷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 지식정보화시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 전자민원 접수·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나. 주요내용

-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
 -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영등포구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전자민원창구 운영
 -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 등에 접수한 민원은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 구청장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1조제1항)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에의 참여유도와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14조제1항)
 -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 마당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
 - 구청장은 의견수렴 창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웹메일 가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5조제3항)
 - 마일리지는 문자메세지 서비스 1건당 30점, 팩스메세지 서비스 A4용지 1장당 50점을 사용할 수 있음.(안 제15조제4항)
 -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음.(안 제17조)
 - 구청장은 세금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9조)
-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안 제22조 제2항)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기타 : 입법예고(2006.1.26 ~ 2006.2.7)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찬재)

○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2에서 정보화 촉진의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부여함에 따라 2000년 7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안된 것이며, 서울특별시 12개 자치구에서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기적으로 타당하다 하겠음.

○ 개별 조문을 살펴보면

- 안제9조 내지 제11조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안은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 통합 민원 창구란을 이용하면 「부동산민원발급, FAX민원, 지방세 인터넷 납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대형폐기물접수, 전세자금대출 신청, 그린파킹신청,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인터넷 민원의 처리 확산 추세에 맞춘 적정한 제안으로 사료됨.
- 안제10조 제2항에서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고 정한 규정은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고 규정하여 민원처리공개에 대한 통제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제15조 제3항과 안제15조 제4항의 무료 문자 메세지 서비스 등 마일리지 도입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선거일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시행이 유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찾고 이용하도록 하는 마일리지 도입 방안은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안제21조에 명시된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대책 강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제21조의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은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에서는 영어·일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차 국제교류가 더욱 빈번해 질 것이므로 타당 하다고 사료됨.
다만, 우리 구에는 중국교포 등이 다수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어 중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21조 제3항에서 “담당 부서를 지정·관리” 한다고 정하였는바 업무의 성격상 문화체육과로 함이 적정 하다고 사료되므로 “공보·문화 담당부서에서 관리”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4. 審查結果 : 原案可決